

# 제안설명서

- 일시 : 2021. 11. 25.(목)
- 장소 :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
- 안건 : 「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 
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 
(의안번호 제2884호, 시장 발의)

행 정 국

행정국장 김상한입니다.

존경하는 **이현찬** 위원장님, **채유미·한기영** 부위원장님  
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

의안번호 제2884호 「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 
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본 개정조례안은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및  
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,

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○ 정보공개제도 운영교육 의무실시에 관한 사항을  
신설하고,

○ 제5조의 제목 “행정정보의 공표”를 “정보의 사전적 공개”로  
변경하며, 사전공개대상 중 계약 관련 정보를 구체적으로  
규정하고,

-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비율을 과반수에서 3분의 2로 확대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.

위원님 여러분!

서울시가 앞으로도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,  
행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 
본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심의·의결해 주실 것을  
요청드립니다.

-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2021. 11. 25.

행정국장 김 상 한